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9-78호
2019. 12. 6.(금)

차 례

규 칙(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규칙 제879호) …1

고 시(2)

-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고시(고시 제2019-140호)42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141호)52

공 고(3)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19-1015호)53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1018호)54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19-1024호)56

행정예고(1)

- 송촌 진가쟁이(노외)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19-1021호)57

공									
람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12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7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리와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

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책임자”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구청장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

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 구와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4.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대전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일반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지방세법」 제84조의4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을 초과하는 법인
 3. 최근 5년 동안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4. 최근 5년 동안 1천만원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세무조사의 유예) ①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

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3. 「지방세법」 제84조의4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을 초과하는 법인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개시 할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조사기간)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 · 업종 ·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 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 · 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행위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30조(조사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

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3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 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 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35조(조사진행 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 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

황 · 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명부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

③ 구청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0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의 유예)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0조제2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와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태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착수 전, 조사 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료·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준비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관리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2) 「조세범 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 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거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적출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재증)

법인유형	주요 목적 사업
제조업	
()	
건설업	
()	
판매업	
()	
운송업	
()	
기타	
()	

법인명 : (인)

대표자 :

법인소재지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작성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제출일자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 연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 연도별(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대전광역시 전체 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우편번호 :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 문의사항 전화 : (042)608-6661, 608-6662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각 사업 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 연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목 차

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 관련 명세서
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
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4.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6.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 명세서
7.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상황

210mm×297mm(백상지 80g/m²)

(3면)

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

법 인 명 : (인) 자 :

법인등록번호 : 지 :

법인소재지 : (제기)

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

210mm×297mm(백상지 80g/m²)

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

법인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

210mm×297mm(백상지 80g/m²)

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연면적 (ⓐ)	비과세면적				과세면적 ⓑ=(ⓐ-ⓑ)	정당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계 (ⓑ)					

※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 ② 정당세액 : 과세면적 × 250원

210mm×297mm(백상지 80g/m²)

4.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① 종업 원수	②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③ 급여 총지급액	④ 비과세 대상급여	과세표준 $\text{⑤} = (\text{③} - \text{④})$ $\text{⑥} = (\text{②} - \text{④})$	⑤ 산출세액 [⑥ × (0.5/100)]	⑥ 기 납부세액		차인세액 $\text{⑦} = (\text{⑤} - \text{⑥})$
							세 액	납부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임금,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①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 ③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 ④ 산출세액 :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210mm×297mm(백상지 80g/m²)

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사업장명	
(단위 : 원)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출 지방소득세 (a)	③기납부 세 액 (b)	납부 일자	④차인 세액 (a)-(b)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연말 정산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 | | | |
|----------------------|---------|---|
| ① | 소득세 구분란 |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
| 기 타 | |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인) | |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따른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
| ② 산출 지방소득세 | |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세율 |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6.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

법인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사업 년도	년도	법인세액신고일 (결정일, 경정일)		년 월 일
	법인 결정 액	원	법인 총 지방소득세액	원	
	법인총건축물 연면적	m ²	법인 총 종업원수	명	

(단위 : 원)

사업장 내역		안 분 내 역		사업장별 법인세 안분비율	사업장별 지방 소득세	기 납 부		추 정 세 액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별 종업원 수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 적			지 방 소득세	납부 일자	본 세	가산세	계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210mm×297mm(백상지 80g/m²)

7.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二〇一九年

확인자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압 수 · 영 치 증

법 인 명(상 호) :

소 재 지(사업장) :

대 표 자(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날인 거부 사유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210mm×297mm)

[별지 제3호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210mm×297mm)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증

상 호(법인명) :

주 소(소재지) :

성 명(대표자) :

위 사람(업체)에 대한 지방세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7조에 따라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관					
예치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등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날인 거부 부기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210mm×297mm

[별지 제5호서식]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자	비고

(210mm×297mm)

[별지 제6호서식]

(1면)

조사결과 보고서

-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 조사일자 : . . . ~ (일간)
 - 추징세액 :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명세서)조사서
 - 취득세 누락분 조사서
 - 비과세 공제내역서
 -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 (명세서)조사서
 -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명세서)조사서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위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복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二〇一〇年

주무관	담당	과장	결재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 표

(단위 : 건/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과세기관		계	구청	구청	구청	구청	구청
사업년도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합계	건수						
	세액						
취득세	소계	건수					
		세액					
법인세	법인	건수					
		세액					
주민세	과점	건수					
		세액					
등록면허세		건수					
		세액					
주민세	(균등분)	건수					
		세액					
주민세	(재산분)	건수					
		세액					
주민세	(종업원분)	건수					
		세액					
지방소득세	(소득분)	건수					
		세액					
지방교육세		건수					
		세액					
농어촌특별세		건수					
		세액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급 성명

직급 세무급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3면)

2.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건축물 명칭 :

○ 과세물건 : 구로길 (동)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구분	계	전용60㎡이하	전용60㎡초과-85㎡이하(감면분)	전용60㎡초과-85㎡이하(과세분)	전용85㎡초과	상가 등
면적 (㎡)	세대 개동					개동
비율	%	%	%	%	%	%
	%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 총 공사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득세 :

○ 비과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4면)

3. 비과세 공제내역서

법 인 명 : (인) 자 :

법인등록번호 : 지 :

법인소재지 : (제기)

(단위 : 원)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4.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

법인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1. 물건의 표시

연결 번호	과세기관	과세물건(소재지)	취득일자	비고
1				
2				
3				
4				

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

연결 번호	차인과표	구분	세율	취득세	농특세	감면분 농특세	계
1		본세					
		가산세					
		계					
2		본세					
		가산세					
		계					
3		본세					
		가산세					
		계					
4		본세					
		가산세					
		계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5.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건축물 명칭 :

○ 과세물건 : 구·군 로 길 (○○동·리)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면적

구분	계	전용 60㎡ 이하	전용 60㎡ 초과 - 85㎡ 이하(감면분)	전용 60㎡ 초과 - 85㎡ 이하(과세분)	전용 85㎡ 초과	상가 등
면적 (㎡)	세대 개동					개동
비율	%	%	%	%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 총 공사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득세 :

○ 비과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법인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

과점주주			현재			현재			증가비율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관계	총주식수	소유주식수	비율	총주식수	소유주식수	비율	

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

과세물건			장부가액	과점비율	과세표준
소재지	종류	수량			

3. 산출세액 (단위 : 원)

납세의무자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점비율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농특세 (가산세포함)
				본세	가산세	계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7호서식]

법인명부

(단위 : 원)

210mm × 297mm(보존용지(2종) 70g/m²)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하여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며,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비(제2조).
- 일반세무조사 정기 조사 대상법인 선정 기준 마련(제11조).
- 부분세무조사의 근거 신설(제13조).
- 세무조사기간의 기산일 명문화(제24조).
- 세무조사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의무 부여(제33조).
-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명확화(제37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고시

2019. 12.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2019년 12월 6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결과

○ 회계별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445,779,185	445,779,185	11,015,423	2.53	
일 반 회 계	438,945,438	427,930,015	11,015,423	2.57	
기 타 특 별 회 계	6,833,747	6,833,747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353	14,353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720,886	720,886	0	0.00	
수질개선	1,490,430	1,490,430	0	0.00	
지하수관리	1,116,455	1,116,455	0	0.00	
주차장	3,491,623	3,491,623	0	0.00	

일반회계

○ 세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기정액	구성비		
총 계	438,945,438	100.00 %	427,930,015	100.00 %	11,015,423	2.57%
100 지방세수입	42,900,000	9.77 %	42,900,000	10.03 %	0	0.00%
110 지방세	42,900,000	9.77 %	42,900,000	10.03 %	0	0.00%
111 보통세	42,630,000	9.71 %	42,630,000	9.96 %	0	0.00%
113 지난년도수입	270,000	0.06 %	270,000	0.06 %	0	0.00%
200 세외수입	14,626,244	3.33 %	14,280,654	3.34 %	345,590	2.42%
210 경상적세외수입	10,953,758	2.50 %	10,842,775	2.53 %	110,983	1.02%
211 재산임대수입	98,701	0.02 %	98,701	0.02 %	0	0.00%
212 사용료수입	1,078,832	0.25 %	1,078,832	0.25 %	0	0.00%
213 수수료수입	4,505,422	1.03 %	4,505,422	1.05 %	0	0.00%
214 사업수입	175,846	0.04 %	175,846	0.04 %	0	0.00%
215 정수교부금수입	3,988,806	0.91 %	3,877,823	0.91 %	110,983	2.86%
216 이자수입	1,106,151	0.25 %	1,106,151	0.26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3,672,486	0.84 %	3,437,879	0.80 %	234,607	6.82%
221 재산매각수입	70,000	0.02 %	70,000	0.02 %	0	0.00%
222 부담금	295,584	0.07 %	295,584	0.07 %	0	0.00%
223 과정금및과태료등	613,933	0.14 %	567,703	0.13 %	46,230	8.14%
224 기타수입	2,192,969	0.50 %	2,004,592	0.47 %	188,377	9.40%
225 지난연도수입	500,000	0.11 %	500,000	0.12 %	0	0.00%
300 지방교부세	13,485,032	3.07 %	10,845,032	2.53 %	2,640,000	24.34%
310 지방교부세	13,485,032	3.07 %	10,845,032	2.53 %	2,640,000	24.34%
311 지난연도수입	13,485,032	3.07 %	10,845,032	2.53 %	2,640,000	24.34%
400 조정교부금등	61,615,901	14.04 %	60,898,901	14.23 %	717,000	1.18%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61,615,901	14.04 %	60,898,901	14.23 %	717,000	1.18%
411 지난연도수입	61,615,901	14.04 %	60,898,901	14.23 %	717,000	1.18%
500 보조금	268,812,065	61.24 %	266,236,345	62.21 %	2,575,720	0.97%
510 국고보조금등	154,929,125	35.30 %	153,342,819	35.83 %	1,586,306	1.03%
511 지난연도수입	154,929,125	35.30 %	153,342,819	35.83 %	1,586,306	1.03%
520 시·도비보조금등	113,882,940	25.94 %	112,893,526	26.38 %	989,414	0.88%
521 지난연도수입	113,882,940	25.94 %	112,893,526	26.38 %	989,414	0.8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506,196	8.54 %	32,769,083	7.66 %	4,737,113	14.46%
710 보전수입등	36,736,486	8.37 %	31,999,373	7.48 %	4,737,113	14.80%
711 잉여금	32,138,307	7.32 %	27,401,194	6.40 %	4,737,113	17.29%
712 전년도이월금	4,598,179	1.05 %	4,598,179	1.07 %	0	0.00%
720 내부거래	769,710	0.18 %	769,710	0.18 %	0	0.00%
721 전입금	769,710	0.18 %	769,710	0.18 %	0	0.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38,945,438	100.00 %	427,930,015	100.00 %	11,015,423	2.57 %
010 일반공공행정	20,790,349	4.74 %	20,390,614	4.76 %	399,735	1.96 %
011 입법및선거관리	731,301	0.17 %	731,301	0.17 %	0	0.00 %
013 지방행정 · 재정지원	918,284	0.21 %	899,031	0.21 %	19,253	2.14 %
014 재정 · 금융	32,703	0.01 %	32,703	0.01 %	0	0.00 %
016 일반행정	19,108,061	4.35 %	18,727,579	4.38 %	380,482	2.03 %
020 공공질서및안전	1,777,377	0.40 %	1,774,180	0.41 %	3,197	0.18 %
025 재난방재 · 민방위	1,777,377	0.40 %	1,774,180	0.41 %	3,197	0.18 %
050 교육	3,094,529	0.70 %	3,094,529	0.72 %	0	0.00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2,506,052	0.57 %	2,506,052	0.59 %	0	0.00 %
053 평생 · 직업교육	588,477	0.13 %	588,477	0.14 %	0	0.00 %
060 문화및관광	10,813,522	2.46 %	9,550,915	2.23 %	1,262,607	13.22 %
061 문화예술	4,589,251	1.05 %	4,651,244	1.09 %	△61,993	△1.33 %
062 관광	231,366	0.05 %	231,366	0.05 %	0	0.00 %
063 체육	5,438,418	1.24 %	4,113,818	0.96 %	1,324,600	32.20 %
064 문화재	554,487	0.13 %	554,487	0.13 %	0	0.00 %
070 환경보호	12,387,182	2.82 %	12,317,102	2.88 %	70,080	0.57 %
071 상하수도 · 수질	286,834	0.07 %	286,834	0.07 %	0	0.00 %
072 폐기물	11,047,808	2.52 %	10,977,728	2.57 %	70,080	0.64 %
073 대기	744,185	0.17 %	744,185	0.17 %	0	0.00 %
076 환경보호일반	308,355	0.07 %	308,355	0.07 %	0	0.00 %
080 사회복지	224,591,231	51.17 %	222,780,676	52.06 %	1,810,555	0.81 %
081 기초생활보장	36,312,235	8.27 %	37,501,574	8.76 %	△1,189,339	△3.17 %
082 취약계층지원	56,260,121	12.82 %	54,497,071	12.74 %	1,763,050	3.24 %
084 보육 · 가족및여성	49,443,068	11.26 %	49,557,125	11.58 %	△114,057	△0.23 %
085 노인 · 청소년	71,549,900	16.30 %	70,346,145	16.44 %	1,203,755	1.71 %
086 노동	2,249,068	0.51 %	2,283,068	0.53 %	△34,000	△1.49 %
087 보훈	1,161,302	0.26 %	1,161,302	0.27 %	0	0.00 %
089 사회복지일반	7,615,537	1.73 %	7,434,391	1.74 %	181,146	2.44 %
090 보건	8,300,148	1.89 %	8,245,522	1.93 %	54,626	0.66 %
091 보건의료	7,757,502	1.77 %	7,702,876	1.80 %	54,626	0.71 %
093 식품의약안전	542,646	0.12 %	542,646	0.13 %	0	0.00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100 농림해양수산	9,578,601	2.18 %	9,570,460	2.24 %	8,141	0.09 %
101 농업·농촌	1,715,513	0.39 %	1,691,472	0.40 %	24,041	1.42 %
	7,863,088	1.79 %	7,878,988	1.84 %	△15,900	△0.20 %
110 산업·중소기업	3,337,988	0.76 %	3,144,757	0.73 %	193,231	6.14 %
114 산업진흥·고도화	2,415,622	0.55 %	2,222,392	0.52 %	193,230	8.69 %
	922,366	0.21 %	922,365	0.22 %	1	0.00 %
120 수송및교통	30,766,683	7.01 %	29,686,301	6.94 %	1,080,382	3.64 %
121 도로	9,650,403	2.20 %	8,570,021	2.00 %	1,080,382	12.61 %
	21,116,280	4.81 %	21,116,280	4.93 %	0	0.00 %
140 국토및지역개발	43,605,573	9.93 %	37,480,728	8.76 %	6,124,845	16.34 %
141 수자원	4,359,596	0.99 %	3,429,596	0.80 %	930,000	27.12 %
	39,245,977	8.94 %	34,051,132	7.96 %	5,194,845	15.26 %
150 과학기술	1,940	0.00 %	1,940	0.00 %	0	0.00 %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940	0.00 %	1,940	0.00 %	0	0.00 %
160 예비비	3,837,296	0.87 %	3,837,296	0.90 %	0	0.00 %
161 예비비	3,837,296	0.87 %	3,837,296	0.90 %	0	0.00 %
900 기타	66,063,019	15.05 %	66,054,995	15.44 %	8,024	0.01 %
901 기타	66,063,019	15.05 %	66,054,995	15.44 %	8,024	0.0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기정액	구성비			
총 계	14,353	100.00 %	14,353	100.00 %		0	0.00%
500 보조금	14,000	97.54 %	14,000	97.54 %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14,000	97.54 %	14,000	97.54 %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14,000	97.54 %	14,000	97.54 %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3	2.46 %	353	2.46 %		0	0.00%
710 보전수입등	353	2.46 %	353	2.46 %		0	0.00%
712 전년도이월금	353	2.46 %	353	2.46 %		0	0.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기정액	구성비			
총 계	14,353	100.00 %	14,353	100.00 %		0	0.00%
100 농림해양수산	353	2.46 %	353	2.46 %		0	0.00%
101 농업·농촌	353	2.46 %	353	2.46 %		0	0.00%
110 산업·중소기업	14,000	97.54 %	14,000	97.54 %		0	0.00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14,000	97.54 %	14,000	97.54 %		0	0.00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20,886	100.00 %	720,886	100.00 %	0	0.00%
200 세외수입	11,927	1.65 %	11,927	1.65 %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18	0.14 %	1,018	0.14 %	0	0.00%
216 이자수입	1,018	0.14 %	1,018	0.14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0,909	1.51 %	10,909	1.51 %	0	0.00%
224 기타수입	10,909	1.51 %	10,909	1.51 %	0	0.00%
500 보조금	645,550	89.55 %	645,550	89.55 %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516,440	71.64 %	516,440	71.64 %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516,440	71.64 %	516,440	71.64 %	0	0.00%
520 시·도비보조금등	129,110	17.91 %	129,110	17.91 %	0	0.00%
521 시·도비보조금등	129,110	17.91 %	129,110	17.91 %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3,409	8.80 %	63,409	8.80 %	0	0.00%
710 보전수입등	63,409	8.80 %	63,409	8.80 %	0	0.00%
711 잉여금	55,534	7.70 %	55,534	7.70 %	0	0.00%
712 전년도이월금	7,875	1.09 %	7,875	1.09 %	0	0.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20,886	100.00 %	720,886	100.00 %	0	0.00%
080 사회복지	720,886	100.00 %	720,886	100.00 %	0	0.00%
081 기초생활보장	645,550	89.55 %	645,550	89.55 %	0	0.00%
082 취약계층지원	75,336	10.45 %	75,336	10.45 %	0	0.00%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490,430	100.00 %	1,490,430	100.00 %	0	0.00%
200 세외수입	9,818	0.66 %	9,818	0.66 %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9,818	0.66 %	9,818	0.66 %	0	0.00%
216 이자수입	9,818	0.66 %	9,818	0.66 %	0	0.00%
500 보조금	1,337,182	89.72 %	1,337,182	89.72 %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1,337,182	89.72 %	1,337,182	89.72 %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1,337,182	89.72 %	1,337,182	89.72 %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3,430	9.62 %	143,430	9.62 %	0	0.00%
710 보전수입등	131,790	8.84 %	131,790	8.84 %	0	0.00%
711 잉여금	82,996	5.57 %	82,996	5.57 %	0	0.00%
712 전년도이월금	48,794	3.27 %	48,794	3.27 %	0	0.00%
720 내부거래	11,640	0.78 %	11,640	0.78 %	0	0.00%
721 전입금	11,640	0.78 %	11,640	0.78 %	0	0.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490,430	100.00 %	1,490,430	100.00 %	0	0.00%
140 국토및지역개발	1,360,125	91.26 %	1,360,125	91.26 %	0	0.00%
141 수자원	1,311,331	87.98 %	1,311,331	87.98 %	0	0.00%
142 지역및도시	48,794	3.27 %	48,794	3.27 %	0	0.00%
900 기타	130,305	8.74 %	130,305	8.74 %	0	0.00%
901 기타	130,305	8.74 %	130,305	8.74 %	0	0.00%

지 하 수 관 리 특 별 회 계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116,455	100.00 %	1,116,455	100.00 %	0	0.00%
200 세외수입	129,300	11.58 %	129,300	11.58 %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7,200	2.44 %	27,200	2.44 %	0	0.00%
216 이자수입	27,200	2.44 %	27,200	2.44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02,100	9.15 %	102,100	9.15 %	0	0.00%
222 부담금	100,000	8.96 %	100,000	8.96 %	0	0.00%
225 지난연도수입	2,100	0.19 %	2,100	0.19 %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87,155	88.42 %	987,155	88.42 %	0	0.00%
710 보전수입등	987,155	88.42 %	987,155	88.42 %	0	0.00%
711 잉여금	987,155	88.42 %	987,155	88.42 %	0	0.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116,455	100.00 %	1,116,455	100.00 %	0	0.00%
070 환경보호	1,080,259	96.76 %	1,080,259	96.76 %	0	0.00%
071 상하수도 · 수질	1,080,259	96.76 %	1,080,259	96.76 %	0	0.00%
900 기타	36,196	3.24 %	36,196	3.24 %	0	0.00%
901 기타	36,196	3.24 %	36,196	3.24 %	0	0.00%

주 차 장 특 별 회 계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491,623	100.00 %	3,491,623	100.00 %	0	0.00%
200 세외수입	1,090,023	31.22 %	1,090,023	31.22 %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87,015	2.49 %	87,015	2.49 %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81,015	2.32 %	81,015	2.32 %	0	0.00%
216 이자수입	6,000	0.17 %	6,000	0.17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003,008	28.73 %	1,003,008	28.73 %	0	0.00%
222 부담금	86,708	2.48 %	86,708	2.48 %	0	0.00%
223 과정금및과태료등	650,000	18.62 %	650,000	18.62 %	0	0.00%
224 기타수입	16,300	0.47 %	16,300	0.47 %	0	0.00%
225 지난연도수입	250,000	7.16 %	250,000	7.16 %	0	0.00%
500 보조금	1,075,000	30.79 %	1,075,000	30.79 %	0	0.00%
520 시·도비보조금등	1,075,000	30.79 %	1,075,000	30.79 %	0	0.00%
521 시·도비보조금등	1,075,000	30.79 %	1,075,000	30.79 %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26,600	37.99 %	1,326,600	37.99 %	0	0.00%
710 보전수입등	401,600	11.50 %	401,600	11.50 %	0	0.00%
711 잉여금	347,408	9.95 %	347,408	9.95 %	0	0.00%
712 전년도이월금	54,192	1.55 %	54,192	1.55 %	0	0.00%
720 내부거래	925,000	26.49 %	925,000	26.49 %	0	0.00%
721 전입금	925,000	26.49 %	925,000	26.49 %	0	0.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491,623	100.00 %	3,491,623	100.00 %	0	0.00%
120 수송및교통	3,263,327	93.46 %	3,263,327	93.46 %	0	0.00%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3,263,327	93.46 %	3,263,327	93.46 %	0	0.00%
900 기타	228,296	6.54 %	228,296	6.54 %	0	0.00%
901 기타	228,296	6.54 %	228,296	6.54 %	0	0.00%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비고
오정동 467-9	대전로1032번길 39-17	2019. 12. 06.	건물신축	대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0,3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대화동 35-94	대화10길 20	2019. 12. 06.	건물신축	행정구역명(대화동)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자·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1015호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231-1번지 상 건축물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래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용호동 231- 1	25m ²	1.18m	21m	이주순

2. 기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중리로 35~33-1	도시가스관 매설	중리동 391 -8 ~ 중리동 391 -9	90	트수콘	4	'19.12. ~ ' 19.12. (착공일로부터 20일) 24.00 (착공일로부터 20일)	24.00 (착공일로부터 20일)	2.92 (허가일로부터 10년)
				160	트수콘	16			

2019년 12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장

위치도 및 사진대지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91-8~391-9 일원
위 치 도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36-2번지 상 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래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신일동 36-2	27m ²	4m	51.66m	이경수

2. 기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촌 진가쟁이 (노외)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송촌 진가쟁이 (노외)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송촌 진가쟁이 (노외)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2. 행정예고 목적 : 송촌 진가쟁이 (노외)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유료화를 추진함 따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
3. 예고대상

주차장명	위치	면수	비고
송촌 진가쟁이 공영주차장	대덕구 송촌동 50 5-2번지	54	08시~22시(14시간) 유료 운영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개방)

※ 시행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운영방법 : 민간 위탁관리

5. 유료화 운영시기 : 2020년 1월(예정)

※ 시행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차요금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4조

구 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 10분 기준)	1 일 주차권	정기주차권 (월)
	최초 10분	10분초과후 때10분 이내			
4급지	100	100	200	2,400	43,000

7. 공고방법 : 대덕구청 홈페이지(www.daedeok.go.kr)

8.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9.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 12. 2. ~ 2019. 12. 22. / 20일간

10.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대덕구 교통과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9년 12월 22일(일)까지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교통과

- 전 화 : ☎ 042-608-5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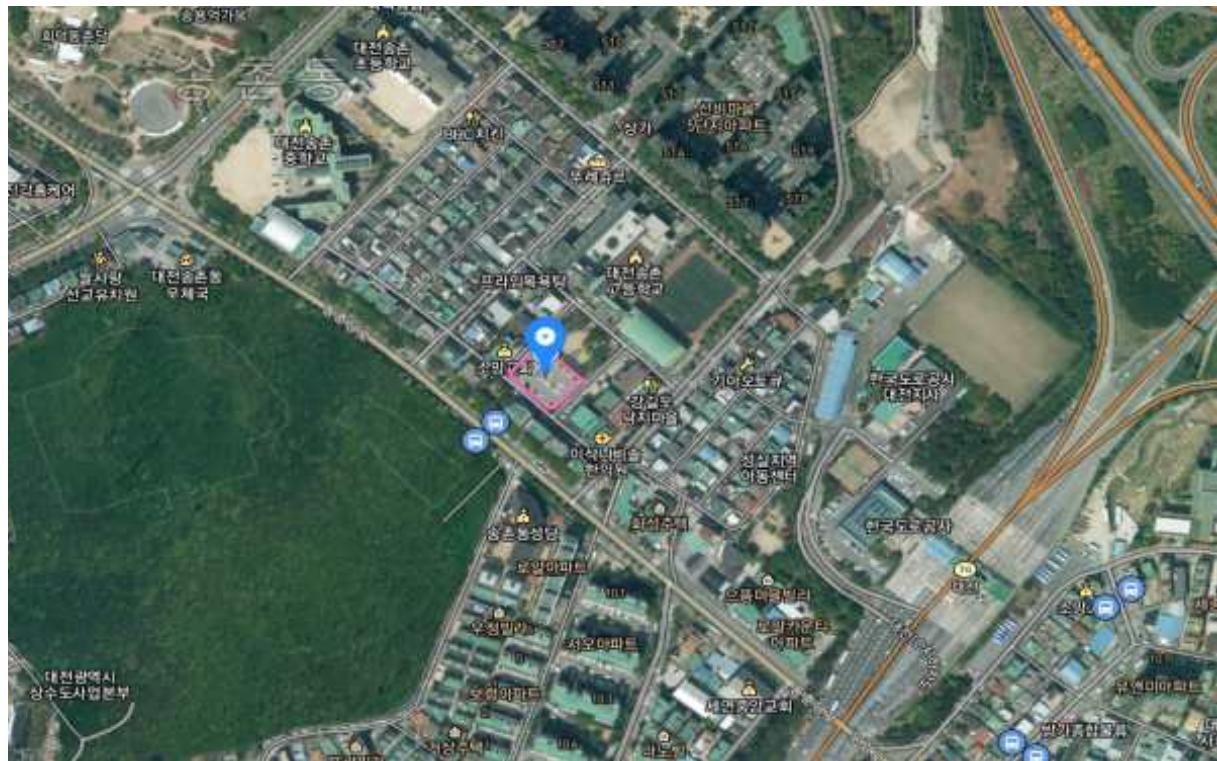
- 팩 스 : ☎ 042-608-3845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송촌 진가쟁이 공영주차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위 치 도



현장사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내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